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어선원 보호를 위해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18년부터 3톤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나 해양경찰청의 어선원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상 어선은 5톤으로 되어 있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톤수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어선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중앙회에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에 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 영 제22조 후단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3부터 별표5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5톤”을 “3톤”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회는 법 제64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제64조의4에 따라 어선 입출항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을 통보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조의5(통보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u>5톤</u> 이상의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② (생 략) <u><신 설></u>	<u>제5조의9(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영 제22조 후단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3부터 별표5까지를 준용한다.</u> 제8조의5(통보절차) ① ----- ----- ----- <u>3톤</u> ----- ----- ----- ----- ----- -----. 1. ----- 2. ----- ② (현행과 같음) <u>③ 중앙회는 법 제64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u>

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제64조의4에 따라 어선 입출항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을 통보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연 락 처	(044) 200 - 5468